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중 “事務局”을 “事務處”로 한다.

제 1 조(목적) 중 “議會事務局”을 “議會事務處”로 하고, “事務局”이라 한다”를
“事務處”라 한다”로 한다.

제 2 조(직무) 중 “事務局은”을 “事務處는”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각 항중 “事務局”을 “事務處”로 하고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
로 한다.

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事務局”을 “事務處”로 하고 “39名”을 “48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 1 조(목적) 이조례는 地方自治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忠清北道 議會事務局(이하 “事務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조례는 地方自治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忠清北道 議會事務處(이하 “事務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무) 事務局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 2 조(직무) 事務處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조(조직) ①事務局에 事務局長 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事務局長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조(조직) ①事務處에 事務局長 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事務局長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39名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을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48名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을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 法律 第4464號(관보 第12008號(乙3) '91. 12. 31)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地方自治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議員의 報酬) ①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會期中에 限하여 日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地方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施行할 때에는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第3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4條의2(議員逮捕의 통지) 政府는 逮捕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遷滯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寫本을添附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3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5條의2(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와直接 關聯된 書類의 提出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要求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要求를 할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38條中 “매년 12月 1日”을 “市·道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0日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5日”로 한다.

第41條第2項中 “30日”을 “市·道議會의 境遇 35日,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境遇 30日로 하고”로 한다.

22<第75回－第2次 附錄>

第50條2項中 “이 境遇 常任委員會는 市·道議會에 限하여 設置한다”를 “이 境遇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中 “地方議會”를 “本會議”로 한다.

第53條 但書中 “地方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의 議決이 있거나”를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以上의 要求 또는”으로 한다.

第82條의 題目 “(事務局等의 設置)”를 “(事務處等의 設置)”로 하고, 同條第1項中 “事務局을”을 “事務處를”로, “事務局에는”을 “事務處에는”으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하며, 同條第2項中 “幹事와 약간명의 職員”을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으로 하고, 同條 第3項中 “事務局長·幹事”를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으로 한다.

第84條第1項中 “事務局長 또는 幹事는 地方議會의 議長의”를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로 한다.

第118條第1項中 “30日전”을 “35日전”으로 하고, 同條 第2項中 “10日전”을 “15日전”으로, “5日전”을 “10日전”으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地方自治法(部分抜萃)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事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運營에 있어서 그合理化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負擔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定員은 内務部令이 定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定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規模의 適正化와 運營의合理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自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 等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 内務部令 第535號

地方自治團體의 地方公務員定員基準等에 關한 規則(部分抜萃)

第1條(目的) 이 규칙은 地方自治法 第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이하 “定員”이라 한다)의 基準 其他 定員의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規則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所屬機關”이라 함은 直屬機關·事業所 및 出張所를 말한다.
2. “直屬機關”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直屬機關을 말한다.
3. “事業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를 말한다.
4. “出張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出張所를 말한다.
5. “補助機關”이라 함은 行政機關의 意思 또는 判斷의 決定이나 表示를 補助함으로서 行政機關의 目的達成에 寄與하는 機關을 말한다.
6. “人口數”라 함은 前年度 住宅 및 人口센서스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다만, 住宅 및 人口센서스를 實施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前年度 常住人口調查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第6條(基準定員의 策定) ① 地方自治團體의 適正한 定員의 範圍(以下 “基準定員”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策定한다.

1. 서을特別市의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text{公務員數} = [-20,573 + (0.00329 \times \text{人口數})] \times 1.10$$

2. 直轄市의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text{公務員數} = [-258.4014 + (0.0013 \times \text{人口數})] \times 1.05$$

3. 道의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text{公務員數} = [1,086.2456 + (0.00015 \times \text{人口數})] \times 1.05$$

4. 市의 基準定員은 別表 1, 郡의 基準定員은 別表 2의 算式에 의하며, 自治區(以下 “區”라 한다)의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가. 서울特別市의 區

公務員數 = [613.02082 + (0.00036 × 人口數) + (24,53364 × 行政洞의數)] × 1.05

나. 直轄市의 區

公務員數 = [207.6481 + (0.000509 × 人口數) + (11,8097 × 行政洞의數)] × 1.05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算式에 의한 值의 소수점이 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 地方自治團體에 國家公務員의 定員이 있는 경우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定員에서 國家公務員의 定員을 뺀 수를 地方公務員의 基準定員으로 한다.

④ 防犯業務에 從事하는 履僑職公務員의 定員과 統合公課金業務에 從事하는 技能職 公務員의 定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準定員에서 除外한다.

第7條(定員의 管理)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別表 3의 基準에 의하여 所屬機關別, 補助機關別로 定員을 配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以下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부득이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別表 4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種類別 定員 算定基準에 의하여 定員을 策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每年 6月 30日과 12月 31日을 基準으로 定員의 適正與否를 調査·確認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의한 定員의 調査 結果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以下 “市·道知事”라 한다)가 地方自治團體別·機關別·職級別·職列別로 綜合作成한 後 다음달 말일까지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⑤ 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增員需要가 發生한 境遇에는 總定員의 範圍안에서 自體調整을 통하여 이에 對處하여야 하며, 調整對象의 優先順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與件의 變化로 인하여 業務의 必要性이 減少된 分野의 人力
2. 類似 또는 重複되거나, 지나치게 細分된 機構에 所屬된 人力

3. 法人 其他 團體 等의 業務能力이 地方自治團體의 業務能力보다 높고 또 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直接 關係없는 業務分野의 人力 및 業務의 性質上法人 其他 團體 等에 委託할 必要가 있고 또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直接 關係없는 業務分野의 人力

⑥市長·郡守·區廳長이 第6條第1項第4號의 定員範圍안에서 增員을 하거나, 第1項 및 第2項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을 調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⑦市·道知事은 당해 市·道와 管轄 市·郡·區間 또는 管轄 市·郡·區 상호간의 公務員 定員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당해 市·道 및 市·郡·區 定員의 100분의 5의 範圍안에서 相互間의 定員을 調整할 수 있다. 다만, 市·郡·區의 定員을 市·道의 定員으로 調整할 수 없다.

⑧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定員을 超過하여 定員을 策定할 境遇에는 미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이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を 거쳐야 한다.

第12條(職級別 定員) ①地方自治團體의 職級別 定員은 合理的인 職級體系를 이 를 수 있도록 부득이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別表 5의 職級別 定員基準에 의한다. 이 경우 소수점 以下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벼린다.

②地方自治團體가 그 地方公務員의 定員을 策定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다음 각號의 定員에 대하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이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사를 거쳐야 한다.

1. 서울特別市 및 그 區: 一般職 4級以上, 研究官, 指導官, 消防正以上 消防公務員, 技能職 4等級以上, 別定職 4級相當以上의 定員
2. 直轄市·道·市·郡·區: 一般職 5級以上, 研究官, 指導官, 消防領以上 消防公務員, 技能職 5等級以上, 別定職 5級相當以上의 定員

第13條(是正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 規則에 定한 基準과 다르게 定員을 策定한 경우에 市·道知事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內務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是正하고, 그 結果를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는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別 表 省 略)